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8. 27.(목) 10:00

제224회 금천구의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1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8. 19.
- 라. 회부일자 : 2020. 8. 19.

2. 제안이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안 제1조~제3조)
- 나. 아동 급식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안 제4조~제8조)
- 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안 제9조~제15조)
- 라.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실시 등(안 제16조~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 나.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 반영(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 3,062백만원)

다. 합의기관: 기획예산과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0. 7. 24. ~ 2020. 8. 13.(20일 이상)
- 2) 비용추계서: 별첨
- 3) 규제사전심사: 별도시행(기획예산과)
- 4) 부패영향평가: 별도시행(민원감사담당관)
- 5)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시행(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급식지원의 대상 및 방법(안 제1조 ~ 제3조)
 -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포함)
 - 급식지원 방법은 단체급식소, 아동급식카드 협력업체를 통한 지원, 도시락, 부식 지원 등
 - 다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급식지원 신청절차 및 대상자 선정 등(안 제4조 ~ 제8조)

- 급식지원 안내, 신청 절차, 조사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안 제9조 ~ 제15조)

- 안 제9조의 ‘아동급식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7조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그 역할이나 기능이 중복되어 자칫 예산낭비의 소지는 없는지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등, 지도·감독(안 제16조 ~ 제17조)

- 급식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 지도·점검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다.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아동급식 지원의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서울시 12개 자치구에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에게 내실있는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금번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